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의 유용성: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박 광 배* 배 현 정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범죄자 프로파일링(profiling)은 범죄자 및 범죄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과 심리측정이론에 기초하여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와 단서들로부터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범죄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범죄수사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분석체계이다. 이를 위하여 범죄현장(crime scene)의 여러가지 흔적과 특성이 마치 심리척도의 문항들처럼 활용되고, 이 문항들에 대한 범죄자와 피해자의 반응으로부터 범죄자의 유형이 이론적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성격심리론, 심리측정방법론, 범죄수사심리학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응용심리학 분야이다. 그런데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수사실무를 위한 응용심리학으로서의 미시적 활용성 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범죄와 관련된 국가의 법적, 행정적 정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개념틀로서의 활용성을 가진다. 본 논고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제공할 수 있는 미시적인 수사실무적 활용성과 거시적인 정책평가적 활용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미시적인 수사실무적 활용성은 영국에서의 조사연구를 예시하여 설명하였으며, 거시적인 정책평가적 활용성은 한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성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로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국가의 범죄정책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거시적 유용성은 심리학이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중심적 논점은 심리학이 과학적인 프로파일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측정, 사회, 임상, 상담, 발달, 인지, 생리 등의 모든 세부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이론과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어 : 범죄, 프로파일링, 수사, 정책평가, 신상공개제도

* 교신저자 : 박 광 배, E-mail : kwangbai@cbucc.chungbuk.ac.kr.

동일인에 의한 범죄는 공통성을 지닌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범죄전의 준비행적, 범죄행위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범죄후의 행적 등의 소위 *modus operandi*(MO)¹⁾를 파악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수사기법을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심리학적 프로파일링(psychological profiling)”, “행동학적 프로파일링(behavioral profiling)” 등의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종류의 프로파일링이 존재하는데, 목소리와 언어를 분석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언어 프로파일링(linguistic profiling)”이라고 부르고, 두개의 범죄가 동일인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파일링을 “연관성 프로파일링(linkage profiling)”이라고 부르며, 범죄자의 거주지역을 파악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파일링을 “지정학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프로파일링들은 일차적으로 범죄수사의 한가지 방법으로서 효용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 프로파일링들이 범죄수사의 구체적 방법으로서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정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개념틀로서의 활용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프로파일링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한 후, 프로파일링의 수사실무적, 이론적, 정책평가적 활용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개요

Geberth(1981, p. 46)는 프로파일링을 “범죄자의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훈련된 시도”²⁾라고 정의한다. 간단히 표

1) *modus operandi*는 범죄수법(method of operation)을 의미하는 라틴용어이다.

현하자면, 프로파일링은 범죄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수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신원(identity)”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형(type)”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범죄동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파일링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프로파일링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범죄자가 정신병리적인 흔적을 남긴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에서 가학적인 고문을 행하였거나, 살인 후에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였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방화를 하였거나, 종교의식의 한부분으로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유아성도착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프로파일링이 매우 효과적으로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해낼 수 있다(Geberth, 1993; Holmes & Holmes, 1996). 범죄현장이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다거나, 살인행위가 사전계획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거나, 사체를 난도질했다거나 등의 범죄특징들은 범죄자의 성격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프로파일링은 이러한 단서들에 기초하여 범죄자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지리적 상태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신뢰롭고 타당한 프로파일링의 방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심리학을 비롯한 행동과학의 연구영역에 속하는 과제이다.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근거

프로파일링은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성격 사이에 특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2) "An educated attempt to provide investigative agencies with specific information as to the type of individual who committed a certain crime."

그런데 모든 범죄이론가들이 이 전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대 형사법과 교정제도의 근간이 되고있는 고전이론가들은 프로파일링의 이 전제에 반대한다.

범죄에 대한 고전이론(classical school)은 몇가지의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첫째는 폭력과 부정은 특이한 혹은 비정상적인 인간행동이 아니라 인간사에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존하는 아주 일반적인 인간행위라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들 속에 범죄성(criminality)을 가진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조금씩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범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전제는 범죄성이라는 특질이 잠재적인 범주변인(categorical variable)이 아니고 잠재적인 연속변인(continuous variable)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고전이론에 의하면 범죄인이 일반인과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범죄를 행할 가능성에서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이다. 또한 범죄성(criminality)과 범죄행위(criminal act)는 명백하게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강한 범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범죄행위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는 범죄행위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는 고통의 회피와 쾌감의 추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행위의 이면에 있는 동기는 그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다른 모든 행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각기 다른 종류의 범죄들도 인간의 가장 일반적이고 범세계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고 간주된다. 인간은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에 의하여 범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결정을 자유의지에 의해 내리고, 어떤 범죄를 행하느냐는 어떤 범죄가 가장 노력을 덜 요구하고 실행하기 쉬우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고전이론이 가지는 이같은 세가지 전제의 핵심은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특수성 혹은 특이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성의 배제’처럼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한가지의 중요한 암시가 내재하고 있다. 그것은 고전이론에서는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독립적인 ‘원인(cause)’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태여 원인을 따진다면 범죄행위 자체가 그 자신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전이론가들은 범죄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초래하는 득과실에 의해 유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성격 사이에 특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프로파일링은 현대 형사법과 교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범죄의 고전이론과는 상충되는 철학적 배경을 가진다. 반면에 프로파일링은 실증학과(positivist)의 범죄이론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수사기법의 일종이다.³⁾ 여기에서는 프로파일링에 내재하는 심리학적 가정을 몇가지 기술하고자 한다.

프로파일링의 첫번째 기본가정은 모든 사람의 얼굴이 모두 서로 다르듯이, 모든 인간의 성격은 독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며, 각기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프로파일링의 두번째 기본가정은 범죄현장에 범죄자의 성격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범죄현장에 범죄자의 비정상적인 성격이 반영되는 것은 마치 심리검사에 이상심리가 반영되는 것과 같다. 피해자를 가해한 방식, 현장의 난잡성, 상해부위의 집중성, 등은 범죄자가 혼란된 성격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정연한 성격의 소유자인지, 어떤 유형

3) 실증학과와 범죄이론은 범죄행위가 그 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다른 원인(ie., 유전자, 환경, 교육, 성격)에 의해 초래된다는 기본적 가정위에 성립하고 있다.

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성적인 환타지를 가진 사람인지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프로파일링의 세번째 기본가정은 동일한 범죄인은 동일한 MO에 의해 범행하고, 동일한 서명을 남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MO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Geberth, 1993).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는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그 집의 부엌칼로 주인을 위협(강간)하고, 금품을 갈취한 후, 칼에 묻은 자신의 지문을 지우기 위해 반드시 칼을 부엌 싱크대에 넣고 수도물을 틀어놓고 도주한다. 이 범죄자는 반복적인 강도행각에서 유사한 행동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범죄현장은 간혹 특정한 범죄자의 독특한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독특한 흔적을 소위 “서명(signatur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범행방식, 범행 순간의 범죄자의 말, 범행 현장에 남기는 물건, 등이 서명이 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수돗물이 틀어진 싱크대 안의 칼” 등이 서명이 될 수 있다.

프로파일링의 네번째 가정은 범죄자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격은 쉽게 가변하지 않는 특성이다. 비록 개인이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여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범죄자는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게 되고, 각 범죄행각에서 유사한 시나리오와 스크립트가 실행되며, 유사한 행동패턴이 사용된다.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을 위한 분류체계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을 위한 분류체계란 범죄현장의 특징과 범죄자의 성격을 분류하는 범주체계를 말하는데, 이 범주체계는 국가마다 다르고

또한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즉, 미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현장과 범죄자의 특성은 한국의 그것과 매우 다르므로 미국에서의 프로파일링을 위한 분류체계를 한국에서의 프로파일링을 위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살인사건현장의 특성과 방화사건현장의 특성이 매우 다르므로 범죄유형에 따라 특징을 분류하는 체계가 달라야 한다. 그런데 프로파일링은 살인사건, 특히 연쇄살인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⁴⁾, 살인사건의 해결을 위한 프로파일링 분류체계는 미국의 FBI가 사용하는 체계가 가장 널리 사용되므로 여기에서는 FBI의 분류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서 최근에 Godwin (2000)이 FBI의 분류체계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안하였으므로, 그 새로운 분류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FBI체계

FBI의 분류체계는 연쇄살인범들이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취하는 여러가지 전략과 방법들을 파악할 목적으로 1978년에 시작된 연구프로젝트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프로젝트는 1980년대에 FBI의 “행동과학팀(Behavioral Science Unit)”으로 발전하였다가, 1995년에 각 행정부처에 산재해 있던 유사한 기능의 기관들과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거쳐서 현재의 Critical Incident Response Group (CIRG)으로 발전하였다.

FBI는 연쇄살인범을 두개의 범주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혼란된 사회낙오형 범죄자(disorganized asocial offender)”이고, 다른 하나는 “정연한 사회거부형 범죄자(organized nonsocial offender)”이다. 혼란된 사회낙오형 범죄자와 정연한 사회거부형 범죄자의 구별은 공격성과 성격장애에 관한 정신분석

4) 참고로, “연쇄살인(serial murder)”이란 3 개 이상의 살인 사건이 동일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1〉 혼란된 사회낙오형 범죄자와 정연한 사회거부형 범죄자의 범행현장의 특징

혼란된 사회낙오형 범죄자	정연한 사회거부형 범죄자
· 우발적 사건 ·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죄 · 피해자를 익명적으로 취급 · 피해자와 최소한의 대화 · 혼잡한 범죢현장 · 돌발적인 폭력 · 결박 등을 사용하지 않음 · 살해후 성폭행 · 사체를 현장에 방치 · 무기를 현장에 방치 · 물리적 증거를 남김	· 계획적 사건 · 피해자를 사전에 선택 ·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취급 · 피해자와 통제된 대화 · 통제된 범죢현장 · 피해자에게 복종을 요구 · 결박 등을 사용함 · 공격적인 행동 · 사체를 옮김 · 무기를 회수함 · 물리적 증거의 인멸

이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이 구별은 특히 범죢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 범죢자 유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성폭행이 관여된 살인사건의 경우는 원한, 금품, 이권, 등의 범죢동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정신분석이론은 이러한 경우에 흔히 범죢행위가 무의식적으로 대상이 전치된 복수심이나 사디즘⁵⁾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FBI의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연쇄살인이 복수심과 사디즘에 의해 유발된다는 기본전제에서 이루어졌다.

이 두유형의 범죢자들은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는데, 항상 홀로 시간을 보내는 “고독자(loner)”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독자인 이유는 두유형에서 매우 상반된다. 혼란된 사회낙오형 범죢

자는 사회일반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 혹은 기괴하다는 느낌을 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특징을 가진 유형이다. 반면에 정연한 사회거부형 범죢자는 타인을 멸시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홀로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다. 이유가 어떻든 두부류의 범죢자는 무의식 깊은 곳에 불특정 다수의 타인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사디즘 등을 가진다는 것이 FBI 분류체계의 기본가정이다.

혼란된 사회낙오형 범죢자의 주된 특징은 범죢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비합리적이거나 다소 어리석어 보이는 요소를 많이 드러낸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연한 사회거부형 범죢자의 범죢는 계획성, 합리성, 치밀성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 두부류의 범죢자에 의한 범죢현장은 <표 1>과 같은 차이를 가진다.

FBI는 <표 1>의 범죢현장특징들을 이용하여 범죢자들을 두개의 범주로 분류한 후, 그들의 성격특징, 범죢후의 행적, 효과적인 심문방식 등을 조사해본 결과 두집단간에 <표 2>와 같은 차이

5) 사디즘 혹은 가학성이라는 용어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가해자의 쾌감이나 즐거움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미리 계획되고 조직화되며 냉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즉, 분노가 폭발하여 일시에 퍼부어지는 폭력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폭력에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로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는 가학행위를 말한다.

〈표 2〉 혼란된 사회낙오형 범죄자와 정연한 사회거부형 범죄자의 특성

	혼란된 사회낙오형 범죄자	정연한 사회거부형 범죄자
성격특징	· 낮은 지능 · 낮은 학력 · 사회적인 부적절성 · 육체노동 · 낮은 출생서열 · 부친직업의 불안정성 · 피학적인 아동시기 · 범행당시의 높은 불안도 · 소량의 음주습관 · 독거 · 범죄현장 근처에 거주 · 언론에 대한 무관심 · 범행후 큰 행동변화 · 야행성 · 신변의 불결성 · 비밀스러운 장소의 소유 · 이성관계 없음	· 높은 지능 · 사회적인 유능성 · 성적인 자신감 · 동거 · 높은 출생서열 · 아동시기의 엄한 훈육 · 뛰어난 감정조절능력 · 남성적 외모 · 매력 · 지역적 이동성 · 직업적 이동성 · 언론보도를 주시 · 모범수
범행후 행적	· 범죄현장에 되돌아옴 · 피해자 장례식에 참석 · 종교에 귀의 · 일기작성과 언론보도물의 수집 · 이사 · 전직 · 성격변화	· 범죄현장에 되돌아옴 · 스스로 경찰과 접촉하여 정보제공 · 경찰의 질문에 대한 대비 · 사체를 이동시킴 · 범죄를 드러낼 목적으로 사체유기
효과적인 심문방법	· 동정심을 보일 것 · 우회적인 표현을 쓸 것 · 상담가와 같은 태도로 대할 것 · 밤에 심문할 것	· 직설적인 심문을 할 것 ·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할 것 · 논리성으로 제압할 것

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FBI 체계에 대한 비판

FBI의 이분적인 분류체계는 몇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비판은 분류기준이 정신 분석적인 추상적인 개념에 기초하고 있어서 그

분류체계의 가정들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기가 불분명한 살인은 대상이 전치된 무의식적 복수심이나 사디즘에 의해 유발된다는 정신분석적인 가정을 지지하는 자료가 전무하다(Stephenson, 1992; Godwin, 2000). 또한 사체와의 성교, 피해자 얼굴에 대한

상해, 사체를 절단하거나 난도질하는 것, 사체를 먹는 행위 등은 사전의 치밀한 계획을 요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에 의한다고 판단되어 정연한 사회거부형 범죄자의 소행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혼란된 범죄자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FBI 체계의 가정들의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범죄자 중에는 두가지 유형이 혼합된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분류체계가 부재한다는 비판도 있다.

FBI 분류체계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그 분류체계가 만들어진 방법에 관한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두부류의 차이를 도출하기 위하여 FBI는 재소자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연쇄살인범들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연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연쇄살인범들과 응하지 않은 연쇄살인범들이 매우 성향이 다른 집단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BI의 체계는 편파된 표본으로부터 도출되었다는 비판이다.

Godwin 체계

FBI의 범죄자 프로파일 체계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Godwin(2000)은 “의미론적 요인모형(thematic facet model)”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였다(<표 3>). FBI의 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Godwin의 체계도 기본적으로는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링을 위한 체계이지만, 범죄자를 이분적으로 분류하는 대신에 2개의 요인(혹은 차원)에 의해 4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Godwin의 분류체계의 첫번째 차원인 행동조직성요인은 공격적 행동이 통제되거나 계산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폭발적이거나 난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분하는 차원이다. 두번째 차원인 집착요인은 가해자가 특정한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가지는 집착(attachment)⁶⁾의

<표 3> Godwin(2000)의 의미론적 요인모형

행 동 조 직 성 요 인	인 지 적	조직적 높은 자기통제 낮은 집착 가학적	조직적 높은 자기통제 높은 집착 가학적
	정 서 적	비조직적 낮은 자기통제 낮은 집착 분노적	비조직적 낮은 자기통제 높은 집착 분노적

지
고
집착요인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집착을 가지는 범죄자는 인간, 여성, 등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자신의 분노나 생각을 해소할 목적으로 그 특정한 피해자를 단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범죄자이다. 반면에 피해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집착을 가지는 범죄자는 그 특정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Godwin (2000)은 자신의 의미론적 요인모형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96명의 연쇄살인범들이 범한 96개의 사건을 65개의 변인들로 코딩하였다.

- 6) 한국의 심리학계에서 영어의 “attachment”를 일반적으로 “애착”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영어의 attachment는 언제나 애정 혹은 사랑을 전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attachment라는 용어가 쓰일 수 있다. Attachment 개념의 핵심은 특정한 개별적 대상의 존재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범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낮은 attachment를 가진 사람이다. 반면에 다른 여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특정한 한사람의 여성을 중요하는 사람은 높은 attachment를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attachment를 집착으로 번역하였다.

65개의 변인들은 모두 “1”과 “0”으로 코딩되었는데, 각 변인이 해당 사건에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1”로, 존재하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65개 변인들의 예는 숨어있다가 피해자를 덮쳤는지의 여부, 피해자에게 눈가리개를 씌웠는지의 여부, 피해자가 발견된 당시에 발가벗긴 상태였는지의 여부, 피해자를 고문했는지의 여부, 등이다. Godwin(2000)이 사용한 65개의 변인들은 부록에 번역되어 제시되어 있다.

65개의 변인들은 65x65의 동시발생행열을 구성하였는데, 동시발생행열은 각기 다른 두개의 변인들이 한개의 사건에서 함께 존재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행열이다. 이 동시발생행열을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에 투입하여 각 변인을 스케일링한 결과, 의미론적 요인모형에서 가정하는 두차원(행동조직성차원과 집착차원)이 확인되었다.⁷⁾

지정학적 프로파일링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거주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파일링이다.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범죄수사기법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과 유용성이 아직 제대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범죄현장의 지정학적 의미나 범죄자의 이동지역 등은 범죄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앞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어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의 특성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7가지 중요한 변인들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어

야 한다: 범죄장소의 유형, 주변경도로, 물리적/심리적 경계, 지역의 주용도,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피해자의 일상활동, 추가범죄에서의 지정학적 변화.

범죄장소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만난 장소, 공격장소, 범행장소, 피해자 유기장소, 자동차 유기장소 등을 포함한다. 물리적 경계는 강, 철길, 등을 의미하고, 심리적 경계는 경찰의 순찰지역,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공간 등을 말한다. 지역의 주용도란 상업지역, 거주지역, 유흥가, 공원 등의 구분을 의미한다.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은 주민 구성원들의 성비, 연령층, 직업유형 등을 말한다. 피해자의 일상활동은 피해자가 주로 무엇을 하고, 어떤 길로, 몇시쯤 다니는지 등에 대한 정보이다. 추가범죄에서의 지정학적 변화는 동일인이 추가범죄를 범한 경우에 처음의 범죄가 보이는 지정학적 요소들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이다.

거 리

거리지각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거리지각은 다음의 여섯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Stea, 1969): ① 교통수단, ② 출발지, 도착지, 길의 매력도, ③ 길의 친숙도, ④ 장애(강, 고속도로 등)의 유형과 갯수, ⑤ 대체경로의 유무, ⑥ 실제 거리. 이 요인들은 범죄자의 거리지각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범죄자는 범죄현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망상증세를 보이는 범죄자는 특별히 친숙하게 느끼는 소위 “편안한 영역(comfort zone)”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불안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흔히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을 범죄장소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폭력성의 대인범죄를 범하는 범죄자는 절도 등의

7) 다차원척도법은 박광배(2000)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대물범죄를 범하는 범죄자보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을 범죄장소로 택하는 경향이 높다(House, 1999). 간단히 말해서, 범죄자는 범죄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리지각에 영향을 주는 6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의 마음속에 동화되어 범죄자의 범죄장소 결정과정을 답습해보므로써 범죄자 유형에 관한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지도

인지도(mental map)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지역을 결정하는 근간이 된다. Lynch(1960)는 사람의 인지도를 구성하는 다섯가지 요소를 파악하였다: 통로(paths), 경계(edges), 지역(districts), 지점(nodes), 명소(landmarks). 이 중에서 특히 범죄자의 행동지역이 어떤 “지점(nodes)”을 중심으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범죄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범죄자의 인지도를 구성하는 “지점”은 예를 들어, 사창가, 과거의 범죄장소, 광장, 지하철역 등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거주지, 직장의 위치, 그리고 유흥가가 대부분의 범죄자들의 소위 “편안한 영역”이 된다(Rossmo, 1994). 범죄자가 주변환경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도는 이 편안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그 인지도에 기초하여 범죄자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유형의 피해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과 판단을 가지게 된다. 또한 동종의 범죄를 연쇄적으로 범하는 범죄자는 동일한 인지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범행의 지리적 행적이 유사한 경향이 있어서 범죄자의 인지도에 대한 정보는 연관성 프로파일링에도 사용된다(Rossmo, 1999). 따라서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 행적이 어떤 종류의 “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면 범죄자 유형에 대한 많은 추론이 가능할 수 있다.

범죄자의 인지도는 피해자를 만난 장소, 피해자를 공격한 장소, 피해자를 살해한 장소, 사체를 유기한 장소에 의해 추정된다. 이 장소들의 선택은 범죄자의 성격과 유형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대로상에서 납치하여,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멀리 떨어진 장소에 유기한 경우는 대담하고 이동성이 좋은 범죄자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범죄자의 정신상태가 조직화되어 있고 차량등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동성이 좋은 경우에는 범죄에 사용된 장소들의 구조가 복잡한 경향이 있다.

이동성

프로파일러는 범죄자가 특정한 장소를 범죄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장소들로 이동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로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장소와 경로는 범죄자에 의해 결코 무작위로 선택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경험이 많을수록 특별히 선호하는 장소와 경로가 명확히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초범에 비해서 범죄경험이 많은 범죄자일수록 범행을 위한 행동반경이 넓다. 즉, 범죄가 반복될수록 범죄자의 이동성이 증가하므로 미지의 범죄자가 많은 범죄경력을 가진 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피해자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수색지역을 넓게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경우, 최초의 범행장소가 최후의 범행장소보다 범죄자의 거주지에서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 선택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피해자를 선택하

여 범죄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를 흔히 “포획성 범죄자(criminals of a predatory nature)”라고 부른다(Holmes & Holmes, 1994). 이런 범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선택된 장소의 지정학적 특징이 피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포획성 범죄자가 피해자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House, 1999). 범죄자는 피해자 유형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가지고, 그 유형의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한다. 따라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유형의 피해자가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은 범죄자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Brantingham & Brantingham, 1984).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이 유용하지 않은 경우

만약 동일인에 의한 연쇄범죄에서 피해자들을 선택한 장소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산포한다면, 그 장소들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일상활동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피해자들을 선택한 장소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는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 특성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범

죄자가 특별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피해자 특성과 범죄장소의 특성 사이의 이러한 일반적 관계에 기초하여 범죄자들을 그들이 사용한 피해자 물색방식과 공격방식에 따라서 <표 4>와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Rossmo, 1999).

FBI의 한 보고에 의하면 연쇄강간범의 51%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범행하는 Poacher 유형이라고 한다(Warren et al., 1995). 또한 Stalker의 경우에도 범죄장소들이 피해자의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에 의해서 범죄자의 거주지역을 추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거주지를 추정하기 위한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이 효과적인 경우는 범죄자의 유형이 Hunter인 경우와 Troller인 경우이고, Trapper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범죄자의 거주지를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프로파일링을 위한 전산시스템

최근에 미국에서는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으로 Criminal Geographic Targeting

<표 4> 피해자 물색방식과 공격방식에 의한 범죄자 유형구분

방식	범죄자 유형	설명
피해자 물색방식	Hunter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탐색하는 범죄자
	Poacher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피해자를 탐색하는 범죄자
	Troller	자신의 일상활동 중에 기회주의적으로 피해자를 선택하는 범죄자
	Trapper	자신이 선호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쉬운 직업이나 일상활동을 의도적으로 전개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선택하는 범죄자
피해자 공격방식	Raptor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덮치는 범죄자
	Stalker	피해자를 추적하여 덮치는 범죄자
	Ambusher	잠입하여 숨어있다 덮치는 범죄자

(CGT)이 개발되었다(Rossmo, 1995, 1999). 이 프로그램은 위에서 기술한 지정학적 자료를 입력하면 특정한 지역내의 여러 장소에 대하여 각 장소가 범죄자의 거주지일 확률을 도출한다. 이 삼차원의 입체적인 확률도면을 “위험표면(jeopardy surface)”이라고 부른다. 이 확률표면의 정확성은 동일인에 의한 범죄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범죄에 이용된 장소(공격장소, 사체유기장소 등)가 많을수록 정확하다고 한다. 이러한 확률자료는 그 자체를 이용하여 범인검거를 할 수는 없지만, 순찰지역의 선정, 용의자의 범위축소, 전과기록의 조회, 등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된다. 특히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은 전통적인 방법의 프로파일링에 비하여 엄청난 시간/인력의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CGT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사의 방향과 초점을 설정하고, 수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범죄수사의 전체적 맥락에서 CGT의 활용도 및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수사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ossmo, 1999): (1) 범죄발생; (2) 전통적인 수사기법과 절차의 수행; (3) 동일인에 의한 다른 범죄를 추정하기 위한 연관성 프로파일링; (4)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기 위한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5) 범죄자의 소재를 추정하기 위한 지정학적 프로파일링; (6) 새로운 수사전략의 수립.

Rossmo(1999)에 의하면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의 가장 큰 유용성은 연쇄범죄의 수사관들이 흔히 직면하는 정보과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수사를 위한 “전략적 정보관리 시스템(strategic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 수사상황에서 실질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구

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범죄가 동일인에 의해 범해졌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각 범죄간의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파악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것은 방대한 범죄자료와 그 범죄자료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및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전산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앞서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일반적 수사절차에서 밝혔듯이, 프로파일링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은 범죄 데이터베이스, 연관성 알고리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알고리즘, 지정학적 프로파일링 알고리즘이다.

프로파일링을 위한 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첫번째 단계는 살인, 방화, 강간, 절도, 강도,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들 각각에서 범죄자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이다. 앞서 소개한 FBI 체계와 Godwin 체계는 바로 이러한 범죄자 유형구분 체계이다. 그런데 방화범의 유형구분과 강간범의 유형구분, 살인범의 유형구분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범죄종류와 범죄자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가능한 많이 고찰하여 범죄자들을 구별하는 개념들을 구성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을 위한 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첫번째 단계이다.

범죄자의 이론적인 유형구분이 마련되면 기존의 범죄자들을 이 유형구분에 따라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들이 범한 범죄의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집단들을 잘 변별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인 분석과정을 수행하는데, 이 통계분석과정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할 변인들이 파악된다. 어떤 변인들이 프로파일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도 역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 앞서 설명한 Godwin 체계는

연쇄살인범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이 체계는 부록에 제시된 65 개의 변인을 이용하여 프로파일링을 수행한다. Godwin 체계를 위한 65 개 변인들은 범죄현장과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통해서 수집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 그런데 방화의 경우는 살인과는 매우 다른 현장을 초래하며, 따라서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는 방화, 절도, 강간, 살인, 등에서 매우 다르다.

프로파일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죄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변인들 (범죄현장 정보) 외에도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변인들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가적인 변인들의 예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경제수준, 가족관계, 전과, 거주지역, 등이다. 이 자료들은 범죄현장자료 및 피해자 자료와 더불어 범죄자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프로파일링의 수사실무적 활용

수사실무적 측면에서 프로파일링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가지 주된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범죄자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범죄자가 사용한 도구나 소유물의 심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며, 셋째는 용의자의 심문과정에서 수사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연령, 인종, 성별, 직업, 종교, 혼인여부, 교육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들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의 초점을 정할 수 있다. 또한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데,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는 추가범죄의 가능성을 가늠케한다. 피해자

의 신변용품, 사진, 등과 같이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은 특정한 용의자와 범죄의 연결고리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프로파일링은 용의자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수사관이 알아내야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수사관의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의자들은 다르게 반응하게 마련인데, 특정한 용의자가 만약 진범이라면 그 용의자가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를 프로파일링은 수사관에게 알려줄 수 있다.

프로파일링의 수사실무적 유용성

위에서 기술한 프로파일링의 목적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죄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프로파일링이 언제나 범죄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프로파일링이 범죄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Godwin(1978)은 프로파일링의 90% 는 범죄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또한 Wilson et al.(1997)은 “거의 모든 프로파일링은 심각한 결함을 가진다(majority of profiles are mildly to severely flawed)”고 주장한 바 있다. 1993년에 발표된 FBI 의 한 통계에 의하면 프로파일링이 수사에 활용된 192개의 사건중에 88 건에서 범인이 체포되었는데, 이 88건의 사건들 중 오직 17%에서만 프로파일링이 실제 범죄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U.S. Department of Justice, 1993).

영국에서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Coals to Newcastle?(CTN) Project”이라고 명명된 연구가 경찰의 주도하에 수행된 바 있고, 그 보고서가 1995 년에 출판되었다(Copson, 1995). CTN 프로젝트에서는 해결된 사건들을 이

용하여 각 사건의 프로파일링에서 제시된 내용과 나중에 실제로 밝혀진 사건내용을 비교하여 프로파일링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는데, 프로파일링의 정확성이 평균 75%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Gudjonsson & Copson, 1999). 프로파일러들의 정확성은 비교적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정확성이 가장 낮았던 프로파일러는 60%의 정확성을 보인 반면, 정확성이 가장 높았던 프로파일러는 89%의 정확성을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프로파일러들의 조언들중 1/5은 틀린 조언일 것으로 간주되었다.

CTN 프로젝트는 영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조사문항중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을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을 묻는 질문들에 대한 영국경찰관들의 응답분포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의 숫자들을 보면, 영국의 경찰관들은 프로파일링이 사건해결 자체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안되지만, 수사과정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사를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찰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후속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을 보면 영국경찰들은 범죄/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은지에 대한 비교자료가 되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의

<표 5>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프로파일링은 :	예(%)	아니오(%)
사건해결에 도움이 된다.	14.1	78.3
수사방향의 결정을 주도한다.	16.3	82.1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3.8	38.6
수사를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82.6	17.4

<표 6> 프로파일링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이유

수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
범죄자 신원을 파악해주기 때문	2.7
범죄/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므로	60.9
수사관의 판단이 옳은지에 대한 비교자료가 되므로	51.6
용의자 심문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5.4
기타	2.3

유용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프로파일링은 범죄자 체포와 사건해결 자체를 위해서는 유용성이 미약하지만, 경찰의 수사를 조력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유용성을 가진다고 사료된다.

범죄자 체포와 사건해결 자체를 위해서 프로파일링의 활용도와 정확성이 이와 같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프로파일링이 아직 과학화되지 못하였고, 프로파일러들의 전문성이 아직 낙후되어 그들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직관에 의하여 비체계화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이 의심되는 또 한가지 이유는 프로파일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희귀한 범죄들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에 기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프로파일링은 범죄자가 무엇인가 정신병리적인 흔적을 남긴 경우와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유용성을 가진다. 반면에 단순강간, 가택침입, 절도, 유괴, 사기 등의 흔한 범죄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미약한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미약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프로파일링은 범죄자 유형파악에서 오류를 범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또 한가지의 가능한 이유는 프로파일링의 기본전제가 범죄 혹은 범죄자의 일반적인 속성과 맞지않기 때문일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파일링은 동일한 범죄자는 유사한 MO 를 사용하고, 유사한 서명을 남긴다는 기본가정에 기초한다. 이 기본가정이 대부분의 범죄자에서 사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물론 그와 같이 일관된 범죄행각을 보이는 범죄자도 일부 존재할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전체 범죄자들 중에 극히 일부분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범죄자가 그러한 일관성을 보이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에 대부분의 범죄자는 일관된 범죄행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동기에 의해서 범죄행위가 촉발되고, 상황의 우연적 전개에 따라 각기 다른 MO 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범죄사건에서 프로파일링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 비판들에 대해서는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의 경우, 사실은 동일인에 의해 범해진 범죄들임에도 불구하고, 경범죄라는 이유로 기록이 영성하게 이루어지고 보관되었거나, 미해결된 범죄에 대한 기록이 각기 다른 지역의 다른 기관에 보관되어 있거나, 범죄간에 시간적 간격이 넓어서 수사기관이 과거 범죄의 존재를 모르거나, 혹은 수사관의 통찰력이 부족하여 두범죄간의 유사성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을 소위 “연관맹목성(linkage blindness)”이라고 부른다(Egger, 1984). 그런데 대부분의 범죄들이 소수의 범죄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Farrington, 1983; Wolfgang, 1983),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재범하며 (Doherty & de Souza, 1995), 전과가 많을수록 재범확률이 높다. 이러한 사실들은 얼핏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범죄들일지라도 사실은 동일범에 의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암시를 강하게 한다. 따라서 범죄기

록이 전산화되고, 범죄간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파악하는 과학적인 전산알고리즘이⁸⁾ 개발되면, 동일범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의 파악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프로파일링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훨씬 많이 수집되어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이 팔복할만큼 증가할 수 있다.

프로파일링의 정책평가적 활용

모든 국가들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한 제도와 정책들은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도와 정책은 그것이 목표하는 사회적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손실을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의 제도와 정책은 그 제도와 정책이 의도하는 사회적 이익과,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손실의 균형을 고려하여 평가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와 관련한 국가적 제도와 정책의 평가를 위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본 논고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에 대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사전예방하여 현존

8) 이 알고리즘을 “연관성 프로파일링(linkage profiling)” 혹은 “사례비교분석(comparative case analysis)”이라고 부른다.

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공동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2001).

따라서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에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신상공개 제도가 일반제지(general deterrence) 효과 및 특수제지(special deterrence)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학적 예측을 하고자 한다. 일반제지란 처벌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인 미래의 범법자들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의미하고, 특수제지란 처벌을 받는 당사자가 미래에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프로파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2개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Holmes & Holmes, 1996). 첫번째 차원은 공격성 차원이며, 피해자에 대하여 가학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성범죄자와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인 성범죄자를 구분하는 차원이다. 두번째 차원은 선호성 차원인데, 청소년 혹은 미성년자와 성접촉이 일시적, 상황적인가, 아니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하고 지속적인 성적 선호를 가졌는가를 구분하는 차원이다. 이 두가지 차원에 의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표 7>과 같이 4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퇴행성(regressed) 성범죄자는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다른 성인과 성적 교류를 하지만, 실직이나 이혼 등과 같이 자신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실패경험을 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술(coping skill)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어린 미성년

자를 대상으로 성적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유형이다. 퇴행성 성범죄자는 주로 여자 미성년자를 범죄대상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성범죄자들은 흔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들도 있으며, 거주지가 일정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미숙성(immature)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선호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남자 미성년자와 여자 미성년자가 공히 미숙성 성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미숙성 성범죄자는 정신지체 혹은 치매 등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고, 일정한 지역을 배회하지만, 주의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홀로 생활한다. 미숙성 성범죄자의 범행은 성폭행의 형태보다는 주로 성추행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가지 형태의 성추행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표 7>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분류

일 시 적 지 속 적	퇴行性 性犯罪者	未熟性 性犯罪者
	固着性 性犯罪者	加虐性 性犯罪者
	우호적	공격적
	공격성 차원	

가학성(sadistic) 성범죄자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성범죄자이다. 가학성 성범죄자는 전과를 가진 경우가 많고, 피해자를 해치는 경우가 많으며, 공격성을 통하여 성적 쾌감을 경험한다. 가학성 성범죄자는 흔히 어린 남자 청소년을 범죄대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고착성(fixated) 성범죄자는 어린 미성년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물이나 금전 등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자는 발달과정의 한 시점에서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 시점에 고착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10대 후반) 부터 어린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자기 또래의 성인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생활과 행동에서 유아적인 요소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온순하고, 지배하기 쉬우며, 비판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프로파일과 심리학적 이론의 관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은 크게 5-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性的學習理論이고, 둘째는 前提條件理論이며, 셋째는 認知歪曲理論이고, 넷째는 精神分析理論이며, 다섯째는 生理學的理論이다. 여기에서는 이 이론들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프로파일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성적학습이론(sexual learning theory)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선호는 어린 시절에 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으로 본다(Howells, 1991). 즉, 어린 시절에 또래와 경험하는 각종 성적 유희(키스, 포옹, 등)를 통하여, 이차성징이 나타나기 이전의 육체에 대한 선호가 학습되는데, 그러한 학습이 성장과정에서 극복되지 않고 고착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선호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성적학습이론은 “固着性 性犯罪者”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다.

전제조건이론(precondition model)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선호가 4가지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Araji & Finkelhor, 1986). 첫째 조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선호를 가진 자는 다른 성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배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관계하려는 정서적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조건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셋째 조건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성인과의 정상적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이유는 치매, 알코홀, 지체, 충동성, 상황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제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이론은 퇴행성 성범죄자와 미숙성 성범죄자를 일부 설명한다.

인지왜곡이론(cognitive distortion theory)은 포르노그라피 등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가지는 의미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행하게 된다는 이론이다(Tate, 1990). 인지왜곡이론은 특정한 범주의 성범죄자를 설명한다기 보다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양상을 기술하는 이론이다.

정신분석이론(psychodynamic approach)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선호를 기본적으로 “변태(perversion)”로 간주한다(Scruton, 1986). 이러한 전제하에, 정신분석이론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선호를 정신병리적이거나 신경증적인 증상으로 간주한다(Glasser, 1989). 정신분석이론은 가혹성 성범죄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생리학적이론(biological theory)은 뇌의 이상이나 신경계의 이상에 의해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자료가 매우 희

박한 관점이다 (Howitt, 1995).

신상공개 대상자의 특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① 청소년 성매수, ② 청소년 매매춘 업주, ③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 수입, 수출, ④ 청소년 인신 매매, 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이 확정된 자로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때,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이다.

지난 2001년 8월 30일에 169명의 신상에 공개되었고, 2002년 3월초에 2차로 445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2001년 8월 30일에 1차로 공개된 169명의 신상을 요약하면 <표 8>과 <표 9>와 같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극히 제한적인 정보이므로, 이들의 심리적인 성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나 추론은 삼가하고자 한다.

가해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30 대가 65% 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는 형법상 의제강간의 성립요건인 13세를 기준으로 보면, 13세 이하가 43.2% 를 차지하고, 14세 이상이 56.8% 를 차지한다. 특기할 사항은 가해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3세 이하의 피해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강간의 비율은 줄고, 추행의 비율은 증가한다. 반면에 성매매(알선)은 30-40대의 가해자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들의 직업분포는 무직이 가장 많고(35명), 그 다음이 회사원(28명), 노동(15명), 상업(8명), 운전기사(7명), 유흥주점업(7명), 종업원(7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고, 회사경영(1명), 공무원(2명) 등의 화이트칼라 직업이 극히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가해자 연령과 피해자 연령의 교차분포표

피해자 나이	가해자 연령대					전체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13세 이하	9 (19.6)	24 (37.5)	20 (52.6)	14 (93.3)	6 (100)	73 (43.2)
14세 이상	37 (80.4)	40 (62.5)	18 (47.4)	1 (6.7)	0 (0.0)	96 (56.8)
전체	46 (100)	64 (100)	38 (100)	15 (100)	6 (100)	169 (100)

<표 9> 가해자 연령과 범죄유형의 교차분포표

범죄유형	가해자 연령대					전체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강간(미수, 치상, 상해)	30 (65.2)	20 (31.2)	12 (31.6)	0 (0.0)	1 (16.7)	63 (37.2)
추행	9 (19.6)	20 (31.2)	17 (44.7)	14 (93.3)	5 (83.3)	65 (38.5)
성매매 (알선)	7 (15.2)	24 (37.5)	9 (23.7)	1 (6.7)	0 (0.0)	41 (24.3)
전체	46 (100)	64 (100)	38 (100)	15 (100)	6 (100)	169 (100)

신상공개특수제지(Special Deterrence) 효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력이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가 어떤 유형의 성범죄자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퇴행성(regressed)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존중감을 훼손시키는 실패경험과 그 실패경험에 의해 야기되는 스트레스가 미성년자와의 성접촉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범죄자가 신상공개에 의하여 직장을 잃는다거나 지역사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재범확률을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숙성(immature)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정신지체 혹은 치매 등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고, 주의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홀로 생활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신상공개특수제지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학성(sadistic) 성범죄자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성범죄자이며, 전과를 가진 경우가 많고, 공격성을 통하여 성적 쾌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가학적인 성범죄자에게는 신상공개특수제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반사회성을 더욱 강화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차로 공개한 자료에서 피해자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가 4건이 있는데, 이 경우들에서 가해자가 가학성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착성(fixated) 성범죄자는 성장과정의 한 시점에서 심리적 발달이 고착된 유형이고, 어린 사람에 대한 성적 선호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신상공개특수제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다. 특히 이들이 자기 또래의 성인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생활과 행동에서 유아적인 요소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미성년자들이 온순하고, 지배하기 쉬우며, 비판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신상공개가 오히려 재범확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신상공개에 의하여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의 비판과 경멸에 직면하면 이들은 더욱 더 성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고, 그 반작용으로 어린 미성년자들을 교제대상으로 더욱 갈구하게 될 것이다.

신상공개일반제지(General Deterrence) 효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유사한 범죄를 행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행을 예방하는 효력이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도 역시 잠재적 범죄자가 어떤 유형의 성범죄자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퇴행성(regressed)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존중감을 훼손시키는 실패경험을 하기 전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신상공개제도는 이들이 나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기도하는 경우에 억제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군다나 이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있으며, 직장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기도하는 경우에 신상공개제도는 하나의 중요한 잠재적 손실로 작용하여 성범죄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박광배 & 조은경, 1998).

미숙성(immature)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정신지체 혹은 치매 등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고, 주의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홀로 생활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신상공개의 일반제지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들은 신상공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가학성(sadistic) 성범죄자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성범죄자이며, 전과를 가진 경우가 많고, 공격성을 통하여 성적 쾌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가학적인 성범죄자에게는 신상공개의 일반제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고착성(fixated) 성범죄자는 성장과정의 한 시점에서 심리적 발달이 고착된 유형이고, 어린 사람에 대한 성적 선호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신상공개의 일반제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이들이 자기 또래의 성인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생활과 행동에서 유아적인 요소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미성년자들이 온순하고, 지배하기 쉬우며, 비판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신상공개의 의미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성인들이 이해하는 양상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신상공개의 제지효과에 대한 결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

가 범죄자 당사자에 대한 특수제지효과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일반제지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프로파일링은 <표 10>과 같은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신상공개 제도는 특수제지효과를 전혀 가지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역효과를 창출하여 재범을 촉발하게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일반제지효과는 잠재적인 퇴행성 성범죄자들에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유형의 잠재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 차로 신상을 공개한 사람들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여자 청소년이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특별히 정신지체나 치매 등의 정신적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고, 반사회적이거나 유아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 차로 신상을 공개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퇴행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연령이 높은 경우들 중 일부가 미숙성 범주에 속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는 퇴행성 범주에 속하는 잠재적 범법자들에 대하여 일부 일반제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큰 제지효과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재범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표 10> 신상공개제도의 심리적 효과 예측

제지효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유형			
	퇴행성	미숙성	가학성	고착성
특수제지	역효과	없음	역효과	역효과
일반제지	있음	없음	없음	없음

결론

현재 구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파일링 체계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일관된 개념적, 이론적 틀이 결여되어 있어서, 국가마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Bekerian & Jackson, 1999). 어떤 체계는 주로 통계학적이고 소위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다른 체계는 임상적이고 정신의학적인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의 행동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운영되는 체계는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적 알고리즘이 아무리 다양하고 산만하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모든 프로파일링 체계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는 바, 프로파일링 체계는 결코 몇사람의 범죄상식이나 수사경험에 의해 구축될 수 없으며, 전산학, 통계학, 수학, 범죄학, 심리학, 행동과학, 정신의학, 지리학, 등의 방대한 학문적 지식과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전담하는 방대한 부서조직이 정부내에 구성되고, 그 조직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프로파일링 체계와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과학적인 프로파일링은 고비용이 소요되는 고급 수사기법의 일종이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와 범죄자의 성향과 생태적 속성이 국가마다,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파일링 체계를 한국에 도입해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위 “데이트 강간”이 미국에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많이 발생하는 반면,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화차이는 프로파일링 체계에서 커다란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프로파일링 체계는 한국의 범죄데이터에 기초하여 한국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그러한 프로파일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범죄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죄 데이터 베이스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가 많이 수월해졌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내의 모든 말단 수사기관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말단 수사기관에서 입력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의 데이터 베이스에 집적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면, 과학적인 프로파일링을 위한 첫번째 기반은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 과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데이터 베이스의 자료를 분석하여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연관성 프로파일링, 그리고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을 위한 전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단 개발된 알고리즘들은 고착적인 것이 아니고, 범죄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즉, 효율적인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데이터 베이스와 알고리즘의 개발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과학적인 프로파일링 체계를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과학적인 프로파일링은 범죄수사를 위한 미시적 기법으로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고, 범죄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정책의 타당성과 성공여부를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개념틀로서의 거시적 유용성을 가진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

한 프로파일링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특수제지효과를 전혀 가지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역효과를 창출하여 재범을 촉발하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반면에 일반제지효과는 잠재적인 퇴행성 성범죄자들에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유형의 잠재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범죄에 관한 국가정책의 평가를 위한 프로파일링의 이러한 거시적 유용성 때문에, 프로파일링은 심리학이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심리학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정확한 프로파일링을 구현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심리학은 과학적인 프로파일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측정, 사회, 임상, 상담, 발달, 인지, 생리 등의 모든 세부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이론과 지식을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서울: 과학교육사.
- 박광배 & 조은경 (1998). 자발적인 준법행위의 촉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95-136.
- Araji, S. & Finkelhor, D. (1986). Abusers: A review of the research. In D. Finkelhor (Eds.), *A Sourcebook on Child Sexual Abuse*. Beverly Hills: Sage, pp 89-118.
- Bekerian, D. A. & Jackson, J. (1999). Critical issues in offender profiling. In J. L. Jackson & D. A. Bekerian (Eds.),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Brantingham, P. J. & Brantingham, P. L. (1984). *Patterns in Crime*. New York: Macmillan.
- Copson, G. (1995). *Coals to Newcastle? Part 1: A study of offender profiling (Paper 7)*. London: Police Research Group Special Interest Series, Home Office.
- Doherty, G. & de Souza (1995). *Recidivism in youth courts 1993-94 (Juristat 15: 16)*. Ottawa: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 Egger, S. A. (1984). A working definition of serial murder and the reduction of linkage blindnes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2, 348-357.
- Farrington, D. (1983). Offending from 10 to 25 years of age. In K. V. Dusen & S. Mednick (Eds.), *Prospective Studies in Crime and Delinquency*. Hingham, MA: Kluwer Nijhoff.
- Geberth, V. (1981). Psychological profiling. *Law and Order*, 29, 46-49.
- Geberth, V. (1993).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 (2nd ed.)*. Boca Raton, FL: CRC.
- Glasser, M. (1989). The psychodynamic approach to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 the paedophile. In M. Farrell (Eds), *Understanding the Paedophile*. London: ISTD/The Portman Clinic, pp. 1-11.
- Gudjonsson, G. & Copson, G. (1999). The role of the expert in criminal investigation. In J. L. Jackson & D. A. Bekerian (Eds.),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Holmes, R. M. & Holmes, S. T. (1994). *Murder in America*. Thousand Oaks, CA: Sage.

- Holmes, R. M. & Holmes, S. T. (1996).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House, J. C. (1999). Towards a practical application of offender profiling: the RNC's criminal suspect prioritization system. In J. L. Jackson & D. A. Bekerian (Eds.),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Howells, K. (1981). Adult sexual interest in children: Considerations relevant to theories of aetiology. In M. Cook and K. Howells (Eds.), *Adult Sexual Interest in Children*. London: Academic Press, pp 55-94.
- Howitt, D. (1995). *Paedophiles and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New York: Wiley.
-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IT Press.
- Rossmo, D. K. (1994). Place, space, and police investigation: Hunting serial violent criminals. In J. E. Eck & D. A. Weisburd (Eds.), *Crime Prevention Studies (Vol. 4)*.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 Rossmo, D. K. (1995). Multivariate spatial profiles as a tool in crime investigation. In C. R. Block, M. Dabdoub & S. Fregly (Eds.), *Crime Analysis through Computer Mapping*. Washington, DC: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 Rossmo, D. K. (1999). Geographic profiling. In J. L. Jackson & D. A. Bekerian (Eds.),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Scruton, R. (1986). *Sexual Desire: A Moral Philosophy of the Erotic*. New York: Free Press.
- Stea, D. (1969). The measurement of mental maps: An experimental model for studying conceptual spaces. In K. R. Cox & R. G. Golledge (Eds.), *Behavioral Problems in Geography* (pp. 228-253).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Stephenson, G. M. (1992). *The Psychology of Criminal Justice*. Oxford: Blackwell.
- Tate, T. (1990). *Child Pornography: An Investigation*. London: Methuen.
-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993). *Uniform Crime Reports for the United States: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2*.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rren, J., Reboussin, R. R., & Hazelwood, R. R. (1995). *The Geographic and Temporal Sequencing of Serial Rap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ilson, P., Lincoln, R., & Kocsis, R. (1997). Validity, utility and ethics of profiling for serial violent and sexual offenders. *Journal of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4, 1-12.
- Wolfgang, M. (1983). Delinquency in two birth cohorts. In K. V. Dusen & S. Mednick (Eds.), *Prospective Studies in Crime and Delinquency*. Hingham, MA: Kluwer Nijhoff.

1 차원고접수: 2002. 4. 10
수정원고접수: 2002. 6. 10
최종게재결정: 2002. 6. 10

Micro-and Macro-utilities of Criminal Profiling for Crime Investigations and Law/Policy Evaluation

Kwang B. Park

Hyunjung Ba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riminal profiling is a scientific tool to organize various crime scene information based on psychological theories and psychometric methodologies and to enhance the success probability of crime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criminal profiling uses various elements comprising the crime scene as if they are items in a psychological test and from the responses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to those elements, makes educated inferences about the type of the perpetrator. Therefore, criminal profiling is an applied branch of psychology in which personality theories, psychometric methodologies,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are systematically orchestrated. On the other hand, it has not been very well recognized that criminal profiling can provide a useful frame of reference to evaluate and predict the outcome of legal policies regarding crimes.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mi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as an investigative tool as well as its macro-utility as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that provide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bases for the evaluation of legal policies. The mi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was explained by reviewing a survey study conducted in the Great Britain. And the ma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as a means to evaluate legal policies was described by using the policy of Korean government called "The Community Notification of Sexual Offenders Against Minors" as a case in point.

Keywords : criminal profiling, crime investigation, policy evaluation, community notification

부록 :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링을 위한 Godwin(2000)의 65개 변인

01. 숨어있다 갑자기 피해자를 덮침
02. 위계에 의해 피해자에게 접근
03. 부상 등을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04. 피해자에게 재갈을 사용
05. 피해자에게 눈가리개를 사용
06. 피해자에게 복면을 씌움
07. 문 등을 부수고 가택침입
08. 야간에 가택침입
09. 증거인멸을 시도
10. 피해자의 거주처를 난장판으로 만듦
11. 피해자의 거주처에 손상없음
12. 피해자의 사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함
13. 사체를 숨김
14. 사체를 이동시킴
15. 사체를 매장함
16. 사체를 절단함
17. 사체가 집안에서 발견됨
18. 사체가 밧줄로 묶여있음
19. 사체가 접착테이프로 묶여있음
20. 사체가 전깃줄로 묶여있음
21. 사체에 수갑이 채워져 있음
22. 가해자의 도구로 피해자를 결박
23. 피해자의 도구로 피해자를 결박
24. 결박도구를 범죄현장에 방치함
25. 사체나 분비물을 먹음
26. 피해자를 살해 전에 8 시간 이상 감금함
27. 범죄현장을 다시 찾아감
28. 사체를 이용하여 儀式행위를 함
29. 사체를 작품처럼 특정한 모양으로 전시함
30. 사체를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도려내거나 절단함
31. 피해자의 의복상태에 손상없음
32. 피해자가 나체상태임
33. 피해자의 의복이 찢겨져 있음
34. 피해자의 의복이 사망에 날부러져 있음
35. 피해자의 의복이 사라짐
36. 피해자의 물건이 없어짐
37. 고문이나 폭행에 의해 피해자의 신체가 심하게 손상됨
38. 피해자 신체가 사망전에 난폭하게 난도질됨
39. 성기가 손상됨
40. 성폭행이 시도됨
41. 피해자 살해후 사체를 난도질함
42. 질삽입에 의한 성폭행
43. 항문삽입에 의한 성폭행
44. 남자피해자를 성폭행
45. 살해후 사체와 성교
46. 정액이 발견됨
47. 발견 당시에 이물질이 피해자 신체에 삽입되어 있음
48. 피해자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했던 흔적 있음
49. 피해자 신체에서 물린 잇자국 발견
50. 충기에 의한 살해
51. 칼 등의 날카로운 흉기가 사용됨
52. 둔기가 사용됨
53. 목이 졸려짐
54. 가해자의 손과 발 등의 신체를 이용한 살해
55. 주변에 있던 물건을 이용한 살해
56. 가해자가 가져온 도구로 살해
57. 살해도구 발견됨
58. 고문이나 범죄를 위해 고안되고 제작된 도구세트를 사용
59. 가학적인 고문 흔적
60. 피해자에게 약물주입
61. 상체에 자상 있음
62. 하체에 자상 있음
63. 가해자가 피해자의 소지품이나 신체 일부를 가져감
64. 피해자의 자동차가 갈취되어 사라짐
65. 피해자 집이 범죄현장임